

95.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 5. 11. 부천시장

나. 회 부 일 자 : 95. 5. 12.

다. 상 정 일 자 : 95. 5. 22.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가. 제안이유

도시영세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95.영세민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지방계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 및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 지방의회의 사전의결로 보증채무를 승인코자 함.

나. 주요골자

1) 자 금 명 : 영세민전세자금 융자금

2) 가구당지원액 : 500만원 한도

3) 지급보증금액 : 520백만원

(원미구 43가구 215백만원, 소사구 34가구 165백만원,

오정구 28가구 140백만원)

4) 지급보증대상자 : 원미구 심곡2동 465-8호 유기선 외 104인

5) 융자금 지급처 : 한국주택은행 부천, 역곡, 원종지점

6) 상환방법 및 지급보증기간 : 2년(단, 전세 제계약시 1회 2년 연장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계정법 제21조 제2항과 95년 경기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의거 91년도부터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 전세계약시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동장 인기명 전세계약 체결 및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연대보증 1인 또는 주택금융진흥원보증기금으로 부터 보증받아 신청하게 되어 있어 융자금 회수, 결손보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 절차나 내용상에 문제가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동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보증을 서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은 잘못 아닌가?	○ 동 사업은 국가사업이나 경기도내 50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부천시 영세서민을 위한 것으로 부천시가 보증토록 되어 있음.
○ 현재까지의 결손 및 회수실적은?	○ 동 사업은 '91년도부터 시작하여 상환기간 2년후 1회 2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회수가 시작되므로 아직은 파악할 수 없음.
○ 결손보전 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 주택은행과의 협약, 연대보증, 가옥주, 세입자, 용자대상 관할동장과 연기명 전세계약, 용자가구에 대한 지속적 관리등 용자금회수, 결손보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도시영세임자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전세금을 용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채무보증하여 주는 것이 타당

나. 반대토론 : 없음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의결(만장일치)

8. 기타 필요한사항 : 없음

95.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의안번호	389
의 결 년 월 일	95. 5. 30 (제38회)

제안년월일 : 1995. 5. 11

제 안 자 : 부 천 시 장

1. 제안이유

95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 지방의회의 사전의결로 보증채무를 승인코자 함.(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

2. 주요골자

95.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다음과 같이 승인함

가. 자 금 명 :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

나. 지급보증금액 : 520백만원

다. 지급보증대상자 :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465번지8호 유기선 외 104인

총 105가구(원미구43가구, 소사구34가구, 오정구28가구)

라. 융 자 금 지 급 : 한국주택은행(부천지점, 역곡지점, 원종지점)

마. 상 환 방 법 : 2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

바. 이 율 : 연리 3%

사. 지급 보증 기간 : 2년간(단, 전세 재계약으로 인한 연장신청자 1회 연장가능)

3. 제안본문

제목 : 95.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

가. 목 적

○ 도시 영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함.

나. 지원방법

○ 융자지원 규모 : 총 520백만원(95. 부천시 배정액)

(※ 재원 : 건설부 국민주택기금)

○ 융자대상

- 부친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중
- 전세금 1,000만원이하(융자금 포함 1500만원이하)인 전세입자
- 가구당 지원액 : 500만원 한도내
- 대출금리 : 연리 3%(본인부담)
- 상환조건 : • 2년 이내 일시상환(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자금관리 : 주택은행에서 특별개정 설치 관리
- 구별 자금 배분액

구	분	배	정	액
	계	520	백 만 원	
원	미 구	215	백 만 원	
소	사 구	165	백 만 원	
오	정 구	140	백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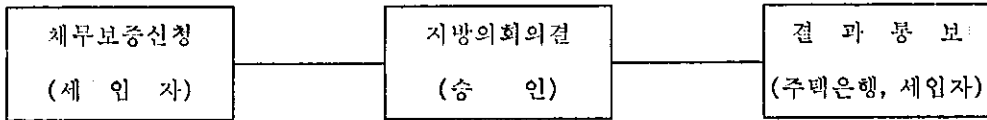
다. 융자 실시 방법

- 융자업무 취급기관 : 주택은행(부천시지점, 역곡지점, 원종지점)
- 시행일정
 - 신청접수 : 95. 4. 3 ~ 4. 14(각동)
 - 개별실태조사 : 95. 4. 4 ~ 4. 14(각동)
 -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 95. 4. 20일까지(각구청)
 - 지방의회 의결 : 보증채무승인행위 승인
 - 대상자 통보 : 의회 의결 후
 - 융자실시 : 95. 5. 20 ~ 9. 30
- 융자계약 체결
 - 계약당사자 :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
 - 보증인 :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에 융자신청
 -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체적 보증

라. 채무이행 보증절차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 보증절차



○ 채무보증 내용

- 전세자금 융자금 상환의 장기간 연체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손 보존문제가 발생된 경우로서
- 주택은행의 복축장 발부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회수 가능 여부를 관한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서 채무 관계자를 직접 방문 확인한 후
-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전토록 하고
- 부천시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마. 기타사항

-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 중 융자금 분을 관한 동장에게 반환하고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하며
- 동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 상환실태 주거실태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함.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년 4월 28일 제출

(95년 4월 28일 서방만위원외 9인 제출)

나. 회 부 인 자 : 95년 4월 29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95년 5월 1일)

라. 의 결 인 자 : 제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95년 5월 16일)